식품의약품안전처

식품의약품안전처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일부 개정 법률(제22098호) 개정 · 공포 알림

1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일부 개정 법률(제22098호)이 2026. 10. 20.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 ·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<주요 개정 내용>
○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의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마약류취급자 등에 대하여 마약류의 투약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검사 불응행위를 처벌하도록 함
○ 중대한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근거를 신설하고, 위반사실의 공표 근거를 마련

2. 해당 개정 법률은 2026. 10. 20.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(https://www.law.go.kr)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법률 제22098호). 끝.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수신자 관련협회장,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,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,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,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식품의약품안전처(전체)

주무관	**이종규**	약무사무관	**박종숙**	마약정책과장	전결 2026. 10. 21. **문은희**
협조자					
시행	마약정책과-7280 (2026. 10. 21.)			접수	M00021488274 (2026. 10. 21.)
우 28159	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			/ mfds.go.kr	
전화번호	043-719-2805	팩스번호	043-719-2800	/ jklee1984@korea.kr	/ 대국민공개

빛나는 발걸음, 새로운 길